

## 6. 施設物の 安全管理에 관한 特別法施行規則

建設交通部令 第19號 1995. 6. 3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시설물의 지정) ①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에 대하여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시설물지정신청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(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)

2. 시설관리대장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시설을

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④영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보는 지정일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제3조(관리주체) 영 제3조 제4호에서 “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.

1.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
2.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
3.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

제4조(안전 및 유지관리계획) ①영 제5조 제2항 제5호에서 “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

2. 시설물의 설계·시공·감리 및 유지 관리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

3.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실적(전년도 시행실적을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

②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.

제5조(진단측정장비) 영 제11조 및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제6조(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정신청서)

①영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한다)

2. 법인의 직전 또는 개사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(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,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

3. 안전진단측정장비현황을 기재한 서류

4. 전문분야별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및 당해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

제7조(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등) ①영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전문분야별로 산정한다.

②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서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.

③영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.

제8조(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변경신고서)

①영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변경신고서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) 영 제12조 제8호에서 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결함”이라 함은 별표2의 결함을 말한다.

제10조(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)

영 제13조 제1항 제9호에서 “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

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육안검사에 의한 결함의 종류·보고 방법 및 평가방법등에 관한 사항
2. 결함부위의 확정방법에 관한 사항
3. 시설물의 결함원인분석에 관한 사항
4.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
5. 시설물의 하중내하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

제11조(구조상 주요부분) 영 제15조 제4항 제3호에서 “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분을 말한다.

1. 교량의 교좌장치
2. 터널의 복공부위
3. 하천제방의 수문문비
4. 댐의 본체, 시공이음부 및 어수로
5.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
6. 상수도 관로이음부
7. 항만시설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

제12조(설계도서류의 보존의무등)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 관련 서류의 종류·제출시기 및 보존기간은 별표3과 같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 관련서류는 사본과 자기디스크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

류) ①영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한다)
2.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개사회계 년도의 대차대조표 및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,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
3.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현황을 기재한 서류
4.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및 당해 건설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

제14조(장비) 영 제20조 제2항에서 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비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비를 말한다.

1. 육안검사 : 돋보기·망원경·카메라·비데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현미경
2. 비파괴시험  
가. 반발경도측정기  
나.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: 망치·채인  
다.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
3. 자기감응검사 : 콘크리트피복측정장비
4.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

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(resistivity)

전위차측정장치(half cell potential)

제15조(유지관리업등록증의 교부등)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지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등록내용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유지관리업등록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6조(유지관리업 등록대장)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등록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.

제17조(유지관리업등록변경신고서) ①영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등록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등록변경신고서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8조(시설물 유지관리현황 장부)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현황장부는 관리주체가 시설물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하여야 한다.

1. 시설물명·위치·관리주체명·시설물 사진·준공일자등 시설물에 대한 일반사항이 포함된 시설물관리대장

2. 일상점검항목을 기재한 점검기록부

3.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제원

4.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현황 등

제19조(증표)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.

제20조(유지관리부대시설)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 말한다.

1. 유지관리용 계단 및 난간
2. 유지관리용 통로
3.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

제21조(유지관리방법)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유지관리장비
2. 유지관리조직
3. 매년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
4. 안전점검시의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
5.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등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생략)

[별표 1]

정밀안전진단장비(제5조 관련)

1. 콘크리트구조물

가. 현장검사

- ① 육안검사 : 돋보기 · 망원경 · 카메라 · 비데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현미경
- ② 콘크리트표면강도검사(rebound & penetration methods) 반발경도측정기
- ③ (초)음파측정(Stress Wave Methods)  
음파측정장치(Sonic Pulse Velocity Mehods) : 망치 · 체인  
초음파측정장치(Ultrasonic Pulse Velocity Methods) 필수
- ④ 자기감응검사(Magnetic Methods)  
콘크리트피복 측정장치
- ⑤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(Electrical Methods)  
콘크리트 전기저항 측정장치(resistivity)  
전위차측정장치(half cell potential)
- ⑥ 화학적 분석(Chemical Methods)  
염분 측정장치(Cl content)
- ⑦ 내하력조사  
정적 또는 동적용력 측정장치

나. 시험실 검사

- ① 페트로그래픽분석(Petrographic analysis)  
코아시험(Core test)기 : 강도시험 · 수분함량 · 공기량 · 염분함량
- ② 중성화 측정방법 - 페놀프탈레인 시험

2. 강재구조물

- 염색침윤시험(Dye Penetrant Examination)
- 초음파시험(Ultrasonic Method (PUNDIT))

[별표 2]

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증대한 결함(제9조관련)

시설물명	주요부위의 증대한 결함
1. 교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</li> <li>-주행의 균열 심화</li> <li>-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</li> <li>-철강재 용접부의 불량용접</li> <li>-교대·교각의 균열발생</li> </ul>
2. 터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벽체균열 심화 및 탈락</li> <li>-복공부위 심한 누수 및 변형</li> </ul>
3. 하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수문의 작동불량</li> </ul>
4. 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월류부의 토사류에 의한 마모</li> <li>-기초지반의 누수, 파이핑 및 세굴</li> </ul>
5. 상수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관로이음부의 불량용접</li> </ul>
6. 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상실</li> <li>-주요구조부재의 과도한 변형 및 균열심화</li> <li>-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</li> <li>-누수·부식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</li> </ul>
7. 항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감문시설중 문비작동시설 부식 노후화</li> <li>-감문 충·배수 아키덕트시설의 부식 노후화</li> <li>-잔교·시설 파손 및 결함</li> <li>-케이슨구조물의 파손</li> <li>-안벽의 법선변위 및 침하</li> </ul>

[별표 3]

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·제출시기 및 보존기간(제12조관련)

구 분	1종 및 2종 시설물
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종류	1. 준공도면 2.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. 구조계산서 4.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
제출시기	준공후 3개월이내 관리주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
보존기간	시설물 존속기간

◇제정이유◇
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1995. 1. 5. 법률 제4922호) 및 동법 시행령(1995. 4. 20. 대통령 제14631호)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◇주요골자◇

- 가.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긴급사항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과 설계·시공·감리 및 유지관리등에 관련된 도서의 수집과 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(제4조).
- 나.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을 정함(제5조·제14조 및 별표1).
- 다. 교량의 주요구조부의 철근부족, 하천수문의 작동불량등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결함의 종류를 정함(제9조 및 별표2).
- 라. 시설물을 설계할 때에는 계단·난간 및 통로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 시설도 함께 설계하도록 함(제20조). 〈건설교통부 제공〉